

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규정 시행세칙

- 제정 : 2001. 3. 2.
- 개정 : 2001. 12. 17.
- 개정 : 2011. 6. 30.
- 개정 : 2015. 5. 13.
- 개정 : 2017. 8. 31.
- 개정 : 2018. 3. 1.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의 목적은 수원과학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규정에 관한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대학 구성원간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학내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성에 관련된 탈선 행위의 방지를 통해 건전한 학내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다.

제2조(발의) 총장은 인권센터장으로부터 성폭력에 해당하는 보고를 받는 즉시 조사를 지시하고, 이에 인권센터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발의할 수 있다.

1. 성희롱(폭력) 사건 경위서 1부.
2. 지도교수 및 학과장 또는 인권센터장 의견서 1부.

제3조(구분) 학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학생본분을 망각한 행위를 하였을 때 또는 학교 명예를 떨어트린 교직원은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

1. 학생의 경우 근신은 7일 이내로 하되 수강은 허용하며 특별지도를 받음. 교직원은 경고·주의에 처한다
2. 학생의 경우 유기정학은 4주 이내로 하되 수강은 불허하며 특별지도를 받음. 교직원은 견책에 처한다.
3. 학생의 경우 무기정학은 무기한 수강을 불허함.(단, 징계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뒤 개선의 정이 있을 때 해제할 수 있다.) 교직원은 감봉에 처한다.
4. 학생의 경우 퇴학은 강간, 무기정학 중인 자로서 개선의 정이 없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교직원은 파면·해임·정직에 처한다.

제4조(근신/경고·주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신 또는 경고·주의에 처한다.

1.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2. 성적 농담을 하는 경우
3. 술 따르기를 강요하는 경우
4. 집단적으로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4-2-18 성폭력예방 및 피해구제규정 시행세칙

- 5. 음란가요를 부르는 경우
- 6.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언어 폭력 등)를 하는 경우

제5조(유기정확/견책)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유기정확 또는 견책에 처한다.

- 1.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2. 일방적으로 구애를 하는 경우
- 3. 일방적으로 춤추기를 강요하는 경우
- 4.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 5. 데이트를 강요하는 경우
- 6.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신체 부위 추행 등)를 하는 경우

제6조(무기정확/감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정확 또는 감봉에 처한다.

- 1. 특정인물을 대상으로 사진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한 음란물을 게재하는 경우
- 2. 데이트 도중 일방적 성관계에서 미수하는 경우
- 3.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강간 미수 등)를 하는 경우

제7조(퇴학/파면·해임·정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퇴학 또는 파면·해임·정직에 처한다.

- 1. 데이트 도중 일방적 성관계를 하는 경우
- 2. 집단 폭력으로 인한 성관계 또는 미수하는 경우
- 3. 무기정확 또는 감봉 이상의 징계중인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는 자
- 4.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강간 등)를 하는 경우

제8조(권리의 정지) ① 퇴학 이외의 징계처벌을 받았을 때에는 징계기간 중에도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계속적인 특별 지도를 받으면서 2일 마다 반성문을 제출해야 한다.

② 근신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③ 근신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처벌을 받은 날부터 해제되는 날 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정지된다.

④ 퇴학 이외의 징계기간 중 다시 학칙을 위반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퇴학 처분한다.

제9조(징계의 해제) ① 징계의 해제는 인권센터장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한다.

② 징계해제를 위해서는 학생에 대하여 지도교수는 학생에 대한 지도결과와 징계해제에 대한 의견서를 인권센터장에게 제출한다.

③ 인권센터장은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품의하여 승인을 받아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통보) ① 인권센터장은 징계의 사실을 지도교수, 학과장, 학부형과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징계의 종류 및 사유를 교무처에 통보하여 학적부에 기재토록

하고 교직원에 대해서는 총무처에 통보하여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토록 한다.

제11조(유보) 이 내규를 개정하고자 할 때는 학생생활·복지위원회 또는 교직원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2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과장 및 지도교수 의견서

년 월 일

학 과 장 : (서명 또는 날인)

지도교수 : (서명 또는 날인)

지도결과 및 징계해제 의견서

지도결과

징계해제 사유 :

년 월 일

학 과 장 : (서명 또는 날인)

지도 교수: (서명 또는 날인)